

세무학회지

제16권 제6호 2015년 12월 pp.43~75

한국세무학회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소득과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수성** · 최원석***

<요 약>

2014년에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결국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장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현물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및 2016년부터 과세에 정인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관한 문제점과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향후 파생금융상품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향후 현물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선물에 대한 파생상품 소득세 과세에 대한 과세체계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시행에 앞서 과세대상과 세율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파생상품에 관한 소득세 부과에 앞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세 부과 이외에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소득세 부과의 문제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분리하여 세제를 살펴보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큰 틀 안에서 소득과세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파생상품 양도차익, 소득과세

* 본 논문은 최근 파생금융상품 운용에 대해 양도차익 소득세 부과의 법 개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 향후 소득세 과세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mercury@tp.or.kr,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wschoi@uos.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5년 6월 30일

1차수정일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9일

I. 서 론

2010년도부터 과세된 연기금의 증권거래세는 금융시장에 거래량의 감소라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융상품 운용에 있어서 증권거래의 감소는 연기금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러한 과세는 주식매매의 지양으로 증권회사의 수수료의 감소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경영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현·선물 차익거래의 감소를 가져와 금융시장의 장기불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과거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바, 연기금에 있어서 증권거래세 비과세의 세제지원을 통하여 증권금융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던 것이 가장 큰 노력으로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연기금은 기관투자자로서의 세제혜택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상황이 다소 바뀌었다. 현재는 모든 연기금의 주식 현물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다. 최근 연기금의 금융상품 운용에 있어서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는 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거래세 부과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까지 논의되어 금융시장에 대한 혼란과 위축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2014년말에 파생상품은 거래세 보다는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법 개정이 일단락되었다.

정부는 2014년말에 세법개정을 통하여 주식운용에 따른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은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KOSPI200 선물·옵션 및 해외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부과되는 세율은 10%로 정해졌고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를 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2016년부터 파생상품거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당초 현물시장인 주식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에 대하여도 거래시에 0.01%의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을 추진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매매가 잦은 파생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업계에서는 2014년말 세법개정은 침체된 자본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로 부과로 인한 금융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연기금은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거래의 회복을 위하여 2010년부터 부과되었던 「증권거래세법」 과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비과세할 것을 다방면으로 시도하여 왔었다. 금융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금융시장의 불황시에 금융시장을 지탱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순기능이 축소되어 현물금융시장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증권거래세 비과세가 될 수 있도록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여 왔었다.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국내 세수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금기금의 주식거래의 대폭적인 축소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를 통한 수수료를 받는 증권회사의 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게다가 2016년부터 선물시장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과세는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인 파생금융시장의 침체기를 가져올 정도로 더욱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개정은 과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압도적으로 휩쓸었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추락을 부추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주식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세와 파생금융상품인 선물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었다. 향후 파생상품 과세와 맞물려 선물거래의 축소를 가져와 차익거래가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동반하락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세 부과와 선물시장의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논의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이탈하고 파생상품의 헤지 효율성 또한 감소하는 거래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향후 금융시장 향방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2014년말 법개정은 이미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된 단계에서 더욱 위축을 부추기는 법개정 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법개정에 대한 평가를 다시금 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와 소득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가 결국 2014년말에 법개정을 통해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법은 통과되었고, 2015년에 이를 보완할 시행령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금융시장의 불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 자본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물거래를 수반하는 파생상품 거래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진화된 금융체제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물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및 2016년부터 과세예정인 선물시장인 파생상품 소득세 부과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현물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하고 선물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2014년 법개정에 대한 정비를 통해 현행과 같은 현물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선물에 대한 파생상품 소득세 과세에 관한 과세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향후 파생금융상품뿐만 아니라 현물금융상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는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인의 금융시장 참여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모색하여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증권거래세 부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파생상품 소득세 부과와 문제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물 시장과 선물시장을 분리하여 살펴보기 보다는 하나의 금융시장의 큰 틀 안에서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소득세 부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의 의의가 있다.

최근 금융시장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금융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를 벗어나 금융시장의 활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식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에 대한 선물시장의 과세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하였던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와 파생상품 소득세에 대한 과세체계의 전반적인 논의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전환 된 것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증권거래세 부과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거래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파생상품 소득세 부과에 대한 법개정의 평가를 통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현행 파생상품금융 거래와 관련한 과세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 거래세에 관한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고, 제Ⅲ장에서는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세 부과와 소득세 부과의 영향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며, 최근 개정된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과세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며, 아울러 세수효과를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주요국의 파생상품 관련 과세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II.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과세 현황

1. 파생상품 관련 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의 선행연구 검토

파생금융상품을 운용할 때 과세되는 과세의 종류는 거래세와 소득세의 두가지가 있다. 양자간의 과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파생상품에 관한 거래세와 소득세 부과에 대한 논의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과열된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 또한 필요하다. 과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금융시장을 뒷받침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하자는데 목소리가 모아져왔다. 과거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와 파생상품 소득세에 대한 과세체계의 전반적인 논의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본 선행연구 이외에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세 이외에 증권거래세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후자의 연구로는 김수성·문성훈(2014)의 연구가 대표적인 바,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기금 이외에 국내 파생상품 차익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비과세의 타당성을 주장함으로써 연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비과세를 주장하고자 한 연구이다.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음을 언급하고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의 부과보다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전자의 연구로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소득세 및 거래세 부과에 대한 논의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로는 주로 파생상품 거래세와 관련한 논의가 많았다.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조세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는 김낙희(2005)의 연구가 있으며, 류혁선(2010)은 파생상품 과세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한편,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과세로 오윤(2005)은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를 차익거래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옥무석(2001), 이상신·오준석(2005)은 파생상품 과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영한·강남규(2010)도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로 파생상품 거래세와 파생결합증권 과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오준석(2010)은 금융거래의 안정화를 위하여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토빈세의 도입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금융거래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영한(2013)은 최근 유럽연합(EU) 소속 일부국가를 대상으로 과세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금융거래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향후 연구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는 금융거래세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입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향후 금융과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김애경(2013)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금융거래세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외환거래세 또는 채권거래세의 도입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밖에 홍범교·이상엽(2012)은 금융거래세 도입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최근에는 전병욱·최유진(2015)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타당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2.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과세 개요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은 다양한 종류로 급변화하게 성장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은 크게 채권과 주식, 파생금융상품과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기초자산으로 운용하는 채권과 주식을 기본자산(underlying assets)이라고 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적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라고 한다. 최근 주식과 채권의 기초자산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 및 선물·옵션을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의 경우에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채권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고 있다. 또한 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다. 단, 대주주에 의한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와 개인의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를 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현재 비과세하고 있으며, 주가지수연계옵션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반면, 집합투자기구는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투자일임에 관한 소득은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금융상품 거래관련 과세 현황

종 류	과 세 여 부
채권	• 이자소득 과세 • 양도소득 비과세
주식	• 배당소득 과세 • 양도소득 비과세. 단, 상장주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며, 대주주에 의한 거래와 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과세함. • 증권거래세 과세
파생금융상품	• 비과세 • 단, 주가지수연계옵션, 파생결합증권(주가워런트증권 제외)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집합투자기구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기타는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

이 중에서 주식거래와 관련한 과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도시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경우에만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일부 대주주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표 2>는 주식시장의 경제주체별 과세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표 2> 주식시장의 경제주체별 과세현황

구 분			개 인	법 인	외국인
주식양도	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세 비과세 거래세 0.3%	법인세 과세 거래세 0.3%	거래세 0.3% 양도소득세1)
		대주주	양도소득세 거래세 0.3%	법인세 과세 거래세 0.3%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거래세 0.5%	법인세 과세 거래세 0.5%	거래세 0.5% 양도소득세
투자주식에서 받은 배당금			배당소득세 14%2)	법인세 과세	배당소득세 10~1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 증권거래와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과세

가. 증권거래와 관련한 과세

증권거래세는 1978년 12월 5일에 도입된 세목으로 주권 또는 지분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도자가 부담하는 국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의 역사는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증권거래세법을 제정하여 증권거래세를 도입 하였다. 그러나 1971년 12월 3일에 이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78년에 주가파동을 겪으면서 동년 12월 5일에 증권거래세법이 제2차 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세의 부과 는 주식을 매도시에 과세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주식양도가액의 0.15%를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로 각각 납부하는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주식매도가액의 0.3% 전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로 부과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와 관련한 과세에 대하여는 이미 <표 2>에서 살

- 1)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소득세는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미국인이나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자본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다.
- 2)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하고 있다.

폐 본 바와 같이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나.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과세

(1)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

최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자 주식에 대하여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할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운용에 대하여도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추진사항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대하여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을 신설코자 하였다. 파생상품 등에 관한 거래세 기본세율은 각각 1만분의 1과 1천분의 5로 부과하고자 하였다. 다만,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기본세율로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현재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과세를 살펴볼 때 법인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인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와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매매순이익에 대한 교육세를 제외하고는³⁾ 별도로 파생상품의 거래 및 관련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⁴⁾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많이 있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금융투자업계의 반발과 현행의 과세체제로 인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소득세 및 거래세를 부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 7월에 들어와 이러한 사항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별도로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⁵⁾ 금융업계의 반발이 커서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일정기한을 두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세법의 내용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 옵션의 경우 거래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기본세율을 0.01%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0~기본세율'의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부과토록 하였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크게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있으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범위에 열거하고 있다. 그밖에 「자본시장과 금융

3) 교육세는 외환 매매차익과 파생상품의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 0.5%로 과세된다.

4) 정부는 2004년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이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었다. 그러나 당시 재정경제위원회는 거래규모 축소 등 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및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5) 2014.12.23 개정법률 제12852호 참조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에 관한 현행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61조의2(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약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④ 제15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014년 개정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로 열거하였다.⁶⁾ 파생상품 양도차익 관련 법조문은 크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 등의 범위)와 제161조의2(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등이 있다.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2의 규정을 두었다.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획재정부령⁷⁾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⁸⁾

6)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7) 2015.2.3자 개정 대통령령 제26067호

8)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소득 계산방법은 선물과 옵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선물) 반대거래 상계 또는 만기 도래 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해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서 관련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의 합계액.

<계산식> : 1계약의 손익 = [(계약체결일의 약정가격 × (A) + (반대거래 계약체결일의 약정가격 또는 최종결제가격) × (A)] × (B)

－ (A) 거래방향상수

• 매도미결제약정 체결 · 매수미결제약정 만기도래의 경우 = +1

• 매수미결제약정 체결 · 매도미결제약정 만기도래의 경우 = -1

－ (B) 거래승수 : (KOSPI200선물) 50만원

(2) 입법안 경과 진행상황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과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96년에 KOSPI200 선물시장을 개설하고 1997년에는 KOSPI200 옵션시장이 개설되었다. 파생상품 시장의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은 초기부터 시장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하던 것이 현재까지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에 포함되어 10~22%의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그간 파생상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로 다양하게 과세를 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그러나 빈번하게 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법이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다음 <표 3>은 파생금융상품 과세 관련 입법의 진행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파생금융상품 과세 관련 입법 진행 상황

구 분	과세방안	논의과정
정부 세제개편안 (2004.10.1)	소득세	-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을 별도로 기타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안 - 국회심사 결과 계류되다 임기만료로 폐기
이해훈의원안 (2009.8.25)	거래세	- 기본세율은 0.01%, 긴급 필요시에는 0 ~ 0.01% 탄력세율 부과 -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2011년 3월에 기재위 대안 발의됨 - 본회의 상정목록에 올랐으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상정목록에서 제외
정부 세법개정안 (2012.9.28)	거래세	- KOSPI200선물은 0.001%, KOSPI200옵션은 0.01% 부과 3년간 유예하여 2016년부터 적용
나성린의원안 (2013.11.11.)	양도 소득세	-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10% 소득세 부과 (25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2년간 유예하여 2016년부터 적용

- (옵션) 반대거래 상계나 만기 도래시에 권리행사·포기 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관련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계산식> : 1계약의 반대매매 상계시 손익 : (매도한 옵션의 옵션가격 - 매수한 옵션의 옵션가격) × (C)
 ○ 1계약의 만기 도래시 손익
 :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 (A), 0] - 옵션가격} × (B) × (C)
 - (A) 권리행사유형상수 : (콜옵션) +1, (풋옵션) -1
 - (B) 거래방향상수 : (매수) +1, (매도) -1
 - (C) 거래승수 : (KOSPI200옵션) 50만원
 ※ 소멸된 계약의 상계순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4. 국내 주식시장과 파생금융상품의 시장 현황 및 거래 현황

가. 국내 주식시장의 현황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상장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320조원에 달하고 있다.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1997년에 78조원에서 2013년에 현재 1,320조원 규모로 연간 평균 19.3%씩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시가 총액 규모 또한 1997년에 15.4%에서 2013년 말에는 99.7%로 증가하였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2011년에 2,260조원으로 최고 정점을 기록한 후, 주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2년에는 1,724조원, 2013년에는 1,504조원의 규모로 축소되고 있다. 다음 <표 4>는 상장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표 4> 상장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추이 : 1997~2013년

(단위 : 조원)

연 도	상장주식 시가총액	명목GDP	명목GDP 대비 구성비	상장주식 거래대금
1997	78	506	15.4%	163
2000	217	603	36.0%	1,206
2005	726	865	83.9%	1,233
2010	1,240	1,173	105.7%	1,894
2011	1,148	1,237	92.8%	2,260
2012	1,263	1,272	99.3%	1,724
2013	1,320 ¹⁾	1,324	99.7%	1,504 ²⁾
연평균 증가율	19.3%	6.2%		14.9%

주 : 1)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7월 1일 개장한 KONEX의 시가총액(0.6조원)을 포함한 금액

2)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금액에 연간매매일수를 곱하여 계산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나.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현황 및 일일 거래현황

국내 파생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과세대상인 장내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KRX)에 총 15개(선물12개, 옵션3개)가 상장되어 있다. 국내 장내 파생상품의 연간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39억 2,800만 계약으로 1경 6,442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KOSPI200선물 및 KOSPI200옵션이 거래량과 거래금액의 대부분(거래량의 95.7%, 거래금액의 71.1%)을 차지하고 있다.⁹⁾ 국내 장내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체 국제시장 거래의 15.7%를 차지하

9) 1996년 증권거래소의 KOSPI200선물 거래 개시로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되었고, 1997년 KOSPI200옵션

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별로는 미국에 이어 2위의 규모이며, 거래소별로는 1위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대표상품인 KOSPI200옵션의 경우에는 세계 전체 지수옵션 거래량의 63.3%를 차지하고 있다.¹⁰⁾

한편, 개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파생상품 시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의 거래비중이 각각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규모는 2013년을 기준으로 장내파생과 장외파생상품 모두 합하면 1.2경원 수준이었다. 장외 파생상품거래는 최근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비해 장내파생상품 거래는 2011년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주가지수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KOSPI200 파생시장 거래가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 참고로 다음 <표 5>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파생상품 거래금액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최근 파생상품 거래금액 추이 : 2008~2013년

(단위 : 조원)

구 분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상장주식	KOSPI200 변동성(bp)
2008	8,621	12,512	6,237	287	1,596	171.5
2009	10,831	13,133	7,653	257	1,997	120.4
2010	14,161	13,784	9,946	318	1,894	77.1
2011	16,442	12,940	11,260	436	2,260	128.6
2012	13,535	12,144	7,942	305 ¹¹⁾	1,724	80.4
2013	11,821	12,020	6,421	263	1,437	64.1
'11년 대비 감소분	△4,621	△920	△4,839	△173	△823	△64.5
'11년 대비 감소율	△28.1%	△7.1%	△43.0%	△39.7%	△36.4%	△50.2%

주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다음 <표 6>은 한국거래소상장 주요 파생상품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일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OSPI200 선물과 KOSPI200옵션의 거래량은 2011년에 비하여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2005년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의 통합으로 한국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이 단일화 되었다. 한국거래소의 기준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KOSPI200 선물의 거래대금은 총 1경 1,260조원, 거래량은 8,727만 계약이며, KOSPI 200옵션의 거래대금은 총 436조원, 거래량은 36.7억 계약임. 다만, 금융감독원의 경우 옵션의 거래대금을 '계약수량×거래단위금액(10만원)×지수'로 산정하고 있어 지수 대신 프리미엄가격을 적용하는 한국거래소 자료에 비해 거래대금이 크게 나타났다.

10) KOSPI200선물 역시 세계전체 지수선물 거래량의 3.3%를 차지하여 6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11) 옵션 거래시 단위로는 2011년까지 10만원이었으나, 2012년 3월에 발행된 9월물부터는 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12년 6월부터는 모든 옵션 종목에 대하여 50만원으로 적용되었다.

2013년도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한국거래소상장 주요 파생상품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일평균)
(단위 : 계약, 억원)

상품명		거 래 규 모		
		2011년	2012년	2013년 10월
KOSPI200선물	거 래 량	351,913	251,736	207,383
	거래대금	454,030	320,312	265,389
KOSPI200옵션	거 래 량	14,805,090	6,352,396	2,373,609
	거래대금	17,594	12,286	10,845
주식선물	거 래 량	241,799	405,205	386,626
	거래대금	1,423	2,415	2,546
3년국채선물	거 래 량	137,662	119,871	123,393
	거래대금	142,600	126,127	131,031
미국달러선물	거 래 량	283,115	215,925	218,218
	거래대금	31,455	24,434	24,124
장내파생상품 전체	거 래 량	15,838,535	7,401,684	3,365,155
	거래대금	662,987	545,760	493,208

자료 : 한국거래소자료

III. 파생상품 소득세 부과의 법개정 평가 및 영향

1.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거래세와 소득세 부과의 고찰

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와 양도차익의 과세 도입 논의

2009년 8월 25일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별도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¹²⁾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세금이 부과

12) 양도소득세를 주장하는 나성린 의원 안과 홍종학 의원 안이 있었다. 그러나 양자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성린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적용세율은 10%의 세율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홍종학의원은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

되어야 하는 이유의 주된 근거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고자 하였으며, 파생상품시장의 지나친 과열을 방지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이다. 특히, 현재 주식 거래시에도 일정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주식인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인 선물시장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계에서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부과시 한국 내에서의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관련 시장을 해외 거래상대방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위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금융위원회 또한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으로 인한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강하게 부작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자 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자본이득세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으나 현재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이득세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물인 주식과 선물인 파생상품 전반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는 형태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파생상품 거래세와 소득세 부과의 장단점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과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거래세 부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시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일평균 매매횟수가 4회인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파생상품 시장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KOSPI200선물의 경우에는 22회, 옵션의 경우에는 50회로 회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로 인한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래세가 일반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와 같은 거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¹³⁾ 고빈도 거래자는 거래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연기금은 일반투자자들에 비하여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거래비용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은 현물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투자자에 비하여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효율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20%의 세율로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나성린 의원안 주장과 유사하게 금융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13)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고빈도 거래비중은 KOSPI200선물의 경우 38%, KOSPI200옵션의 경우 44%이다.

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가격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세 부과로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는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 대한 투자 선호도 역시 감소되어 양 시장의 동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거래세 부과한 사례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는 대만 뿐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거래세를 도입하였다가 시장위축으로 인하여 거래세를 폐지한 사례도 있다.¹⁴⁾

이와 반대로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우선, 그동안 금융시장의 육성 등을 위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파생상품시장 개설 이후 시장이 상당 수준 성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세할 시기가 되었다고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및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볼 때 파생상품의 소득세나 거래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만, 과세 방식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물주식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가 아닌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점을 감안하면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선물·옵션 거래수수료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낮은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거래비용의 상대적 우위가 유지되어 거래량 감소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간 자본이동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EU 차원에서도 채권·주식·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⁵⁾ 이에 부응하여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거래단계에서 과세하기 보다는 소득단계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7>은 파생상품 거래세와 소득과세의 장·단점을 살펴본 것이다.

14) 대만은 거래세 부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거래량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2011년에는 9.5%이었다.

- 스웨덴 : 84년 선물·옵션 등에 거래세 부과 이후 거래가 해외로 유출되어 92년에 거래세 폐지
- 인도 : 08년 파생상품 거래세를 신설 후 시장위축 우려로 실제 부과는 하지 못하고 09년 7월 폐지
- 일본 : 98년까지 주식 0.3%, 선물 0.001%, 옵션 0.01%로 거래세를 과세, '99년부터 자본이득세로 전환

15) EU가 도입하려는 금융거래세의 세율은 주식·채권 0.1%, 파생상품 0.01%이다.

〈표 7〉 파생상품 거래세와 소득과세의 장·단점 비교

구분	거래세	소득세	병행과세
찬성 논거	• 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 파생시장 투기적 거래 억제에 효과적 • 과세행정비용 작음 • 일정 규모의 세원 확보가 가능	•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원칙(조세회피, 변칙증여 등을 방지) • 상대적으로 투기성향이 높은 개인 투자자의 투기적 거래 억제 • 거래감소효과가 거래세보다 작음 •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원칙을 유지하며 투기적 거래 억제에도 효과적 • 현재 주식시장도 병행과세형태로 과세된다고 볼 수 있음
반대 논거	• 장내파생시장이 최근 위축된 상황임 • 과세시 전체 파생시장 거래감소 • 거래수요의 해외유출 가능성 • 한번 거래세가 도입되면 양도소득세 추가부과가 쉽지 않음	• 전면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과의 형평성 • 조세행정비용이 거래세에 비해 큼 • 과세로 인해 외국인 거래비중이 더욱 커질 수 있음('13년 선물 45%, 옵션 57%) • 금융상품들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적인 과세방안 필요	• 세제의 복잡성 우려됨 • 최근 장내파생시장이 위축된 상황임
해외 사례	대만	미국, 일본, 브라질, 영국 등	이탈리아 (거래세는 금융기관 거래에 한정하여 부과)

다. 거래단계의 과세보다는 양도단계의 소득과세 타당

2010년 증권거래세법의 개정으로 주식운용 단계에서는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파생상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선물, 옵션 시장이 개설되면서 파생상품의 운용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들어 선물을 비롯한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거래단계에서 과세를 하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최근 일부 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하여 파생상품의 매매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거래세와 소득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다가 결국 파생상품 운용단계에서 거래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소득과세로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는 거래단계의 과세보다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거래세보다 시장에 악영향을 덜 미치고 과세 원칙에도 더욱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물인 주식에 대한 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행의 파생상품 소득세 부과는 합리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거래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거래세보다는 이익에 대해 세금

을 내는 양도소득세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이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파생상품의 과세는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시장이 축소되면서 당초 세수증대를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과세에 따른 세수효과도 감소하고 파생상품 관련 운용시장도 축소되는 이중의 고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이와 같은 이유로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거래세 보다는 작기 때문에 거래단계보다는 소득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거래세 부과와 소득세 부과는 모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방안 마련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전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거래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거래세 보다는 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2.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과세의 평가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상황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개설된 1996년 당시 신금융 상품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신금융상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정책을 도입하였고, 그 이후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최근 거래량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파생금융시장의 안정과 활황으로 인하여 거래세 단계의 과세와 소득 단계의 과세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주식인 현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세체계가 선물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될 것이지만, 세수나 현실적인 과세기술상의 한계, 정책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공평과세만을 추구할 수는 없어 소득과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래단계마다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에도 일리는 있다. 현물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과세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 끝에 결국 정부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파생금융상품 뿐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들에 대해서도 과세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여 소득과세를 하기로 하였으며, 시장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율을 탄력세율로

16) 이에 대하여는 채은동(2012),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파생금융상품 과세와 관련한 보고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낮게 조정하고 과세대상 또한 최소한으로 정하였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소득세 과세의 범개정은 소득세 과세체계의 조세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타당하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3.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로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선, 금융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세가 비과세되어 과거와 같이 활발할 거래가 유지된다면 주식매매회전율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변동성이 커져 현·선물 차익거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금융업계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하게 되더라도 금융시장에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될 경우 거래 승수인상과 호가제한 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없던 과세가 새롭게 발생되어 개인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잇따른 규제에 따라 국내 파생시장의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소득세법 개정에 대하여 금융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파생상품의 거래량 감소를 들고 있다. 개인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모두에게 거래량의 감소가 될 것으로 보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로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시장유동성이 축소되어 거래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거래량도 더불어 감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거래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수증대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량 감소에 대한 예측이 불분명해지면서 세수 효과 조차도 확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2014년말에 새롭게 과세하기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대상으로는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중에서 장내거래로 국한하였으며, 선물과 옵션 거래 중에서 KOSPI 200선물과 옵션으로 과세대상을 국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후술하고자 한다.

4. 파생상품 거래세와 파생상품소득세 과세로 인한 세수효과 비교

파생상품 거래세와 소득세 부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와 소득세 부과에 따른 세수효과를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의 세수효과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 거래에 대하여 각각 0.001%, 0.01% 세율로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여 2016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동 법안은 2012~2013년 국회심사에 장기간 계류 되었던 법안이다. 그만큼 본 법안은 과세상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파생금융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에 주식운용 거래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세수효과로는 연간 74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의 자료에 의하면 주가지수선물에 0.001%, 주가지수옵션에 0.01%를 적용할 경우 거래량은 선물 13%, 옵션 14%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세방안으로 인해 세수(2013년 기준)가 선물과 옵션에서 각각 559억원과 226억원 발생하나 주식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축소되어 증권거래세가 40억원 감소하는 등 전체 세수효과 측면으로 볼 때 연간 744억원의 거래세 세수를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 최근 파생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효과 744억원 중에서 약 절반(354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표 8>은 2013년도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세수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8>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세수효과 : 2013년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2013년 거래대금(조원)	과세에 따른 거래감소효과(%)	과세표준 변화분(조원)	세율(%)	세수효과 (억원)
KOSPI200선물	6,421	△ 13%	5,587	0.001%	559
주식 프로그램 차익시장	10.3	△ 13%	△ 1.3	0.3%	△ 40
KOSPI200옵션	263	△ 14%	226	0.01%	226
거래세 과세에 따른 전체 금융시장의 세수효과					744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이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별도의 세수추계를 하였다. 다음 <표 9>는 홍범교외1(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세수추계를 보여준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거래세 부과시 거래감소를 나타내는 탄력성이 매우 큰 범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에 따른 거래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선물에 대하여 0.001%, 옵션에 대하여 0.01%를 부과할 경우의 세수추계 효과는 2011~2013년까지 각각 1,562억원, 1,099억원, 905억원 정도 추계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최근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규제강화 이후 거래량 감소에 따른 연차별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8>과 비교하면 조세행정비용과 세수를 고려할 때 거래세 부과가 양도소득세 부과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현물인 주식시장의 거래가 증가하면 거래세는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거래세 과세보다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음 <표 9>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의 세수를 추계한 것이다.

<표 9>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세수 추계액

(단위 : 억원)

연 도	KOSPI200선물		KOSPI200옵션	
	거래대금	세수(0.001% 세율)	거래대금	세수(0.001% 세율)
2011	112,599,330	1,126.0	4,363,264	436.3
2012	79,437,345	794.4	3,046,847	304.7
2013	64,214,227	642.1	2,628,734	262.9

자료 : 제8차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소위원회 자료를 참조함

거래세 부과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가격변동성을 감소시켜 시장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오히려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거래를 크게 감소시키고 유동성도 감소하여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반대의 연구도 있다.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거래세 부과로 인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거래빈도가 높은 거래자의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들의 거래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OSPI200선물·옵션 거래량이 전체 파생상품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거래세의 부과는 세수확보와 투기거래의 억제라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 만일 거래세 부과가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없다면 세금부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홍범교·이상엽(2012)의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 거래량과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KOSPI200선물과 옵션시장의 유동성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래비용 증가가 거래량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¹⁷⁾ 홍범교외(2012)의 연구에서는 정부입법에서 주장하는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에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정사업본부의 매수차익거래의 감소와 같이 실제적으로 거래세의 부과는 금융상품의 거래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홍범교·이상엽(2012)의 『금융거래세 도입 방안 연구』 참고

나. 파생상품 소득세 부과의 세수효과

위에서 언급한 파생상품 거래세와는 달리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소득단계에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주식 현물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에 대한 전면적인 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로 손실이 발생하는 개인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파생금융상품 소득세 과세방안의 경우에 과세범위를 어떤 파생상품으로 한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¹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의 세수추계를 참조해보면 다음과 같이 파생상품 소득세 과세 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¹⁹⁾ 개인별 이익통산에 따른 세수가 계좌별 이익통산에 따른 세수의 93%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세수를 추계하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율이 10%일 경우 368~480억원 규모가 될 것이며, 양도소득세율이 20%일 경우 735~960억원의 규모가 될 것이다.

<표 10> 파생상품 소득세 과세시 세수 효과

(단위 : 억원)

세율	2011년	2012년	2013년
10%	475.9	479.8	367.7
20%	951.8	959.6	735.4

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참조함.

또한, 파생상품거래세의 부과는 파생상품의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량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율이 20%일 경우에는 10%일 경우보다 거래량 감소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홍범교외1(2014)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비율 10%를 가정할 경우 2013년 거래량 기준 연 367억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거래량 감소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과세가 이루어지는 다른 나라의 경우 모두 손실에 대한 공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과세안에도 시행령 차원에서 공제가 확대

18) 파생금융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만원) × 20%

19) 동 세수효과는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분석한 것으로, 개인의 주식양도차익 실적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세수효과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될 경우 세수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법개정의 세수 효과가 미약한 세법개정으로 예측하고 있다.²⁰⁾ 예상되는 세수효과로는 연간 세수가 약 300억원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300억원의 세수를 보충하고자 주식선물 일평균 거래액만 2,000억원이 넘는 시장을 쥐고 흔드는 셈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IV. 파생상품 양도차익 소득과세의 법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파생금융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기존의 현물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와 맞물려있다. 그러므로 선물에 대한 파생상품 양도차익으로만 국한하여 법개정을 평가하기 보다는 현·선물의 종합적인 토대로 살펴본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법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1.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의 소득과세에 대한 문제점

2014년 한해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다가 결국 거래세 부과보다는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일단락되었다. 장내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장외 파생상품에 대하여 파생금융 거래의 일부에 증권거래세를 확대·적용하는 파생상품 거래세안이 제시되었었다. 그렇지만 결국 장내파생 금융상품 중에서 KOSPI200선물과 옵션에만 국한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율측면에서도 당초 20%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탄력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파생상품 거래세의 부과보다는 소득과세로 개정되어 그나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래세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과세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은 존재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거래량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수증대에는 그다지 큰 효과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2014년말 법개정에 대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를 들 수 있다.

가. 거래량 축소로 인한 금융시장 위축의 문제점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

20)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면서 동시에 현물시장의 거래 또한 축소되고 세수도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되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서는 주식인 현물에 대해서 거래세를 0.15~0.5%로 부과하고 있는 반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의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는 상황이다. 파생상품 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주식과 같이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장기간 추진해 왔었다. 2012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파생상품 거래시 0.0001%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함에 따른 문제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거래세를 부과함에 따른 문제점은 다양한 바, 우선 금융시장에서 연금기금의 주식매매가 감소하게 된다. 과거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하여 거래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연기금은 주식의 매매를 감소하고 회전율을 제한하는 운용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물의 증권거래세 부과로 인한 차익거래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증권거래세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증권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부과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주식매매를 축소하여 회전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세수분보다 거래상대방인 증권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법인세수가 감소될 수도 있다. 증권거래세의 증가분보다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과되는 증권회사 수수료 수익의 법인세 감소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효과만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 부과로 인하여 차익거래가 감소할 수도 있다. 최근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자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게 발생하였다. 즉, 과거 주식 차익거래 시장을 우정사업본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외국인이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²¹⁾ 주식거래 회전율이 높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가 없어지

21)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매긴 증권거래세는 금융시장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세수 증대 효과보다 거래 급감과 변동성 확대 등 국내 증시의 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2010년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그리고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우분)를 비롯한 국가지자체까지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후 기관은 차익거래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졌다. 현물과 선물의 일시적인 가격차이를 이용하는 차익거래 특성상 수익은 0.1%에 불과한데, 거래세는 0.3%에 달하다보니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것이다. 2011년 115조원에 달하던 차익거래 시장은 기관이란 투자 주체의 한 축을 잃게 되면서 2013년 한 해 동안 20조원,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에 비하여 세수규모 또한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3년도 한해에 우정사업본부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된 세금은 244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차익거래가 급감하며 거래 상대방이 낸 세금은 고작 1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히려 정부가 얻은 세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거래량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차익거래 매매에서 외국인의 비중

게 되고 주식거래량이 급감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의 세수보다는 우정사업본부와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인 증권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법인세 및 주식수수료의 감소로 인한 증권회사의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전체 세수가 감소되어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의 부과로 인하여 국내 매수차익의 감소되는 대신 해외의 차익거래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무위험거래인 차익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 매수차익거래는 지속적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내 주식시장을 받쳐주는 우정사업본부의 증권시장의 지지대 역할은 사라지게 되어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도 불충분한 세수효과의 문제점이 나타날 전망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총 368억원의 세수효과가 추정되어 그다지 세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반면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총 163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나 여전히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실익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것은 거래세의 부과에 비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협력비용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연간 세수효과는 투입되는 조세행정비용에 비하여 작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현물은 증권거래세 과세, 선물은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로 인한 이원화의 문제점

현물인 주식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선물인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은 이원적인 과세의 분리로서 과세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014년말 개정세법에 따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과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주식 현물시장에 대하여는 개인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차익 과세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만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일단 파생상품에 양도차익에 과세가 된 이상 더 이상 현물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의 소득과세를 미룰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향후 양자 간의 과세체계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부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향후 현물거래에 대하여도 매매차익 과세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파생상품 시장과 현물시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

은 2009년 9%에서 점차 늘어 2013년에는 65.8%를 차지했다. 완충제 역할을 해주던 기관의 거래증발로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 독무대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장이 급격히 변할 때 차익거래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마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전환되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음을 알 수 있다.

문이다. 주식시장은 거래세 부과로 파생상품은 양도세 부과로 이원화된 과세체계를 유지하기에는 세제 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행과 같은 과세체계는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물시장에서의 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면 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것이다. 통상 주식현물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을 이용하여 가격하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하게 된다. 이때 현물시장의 가격하락에 따른 양도차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도한 선물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현물시장에 대하여 손실분을 현물시장에서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헷지효과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²²⁾

다. 과거 손실분에 대한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

금번 개정된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최대의 문제점으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3년간의 순수익에 한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매년 계좌별로 파생상품의 매매순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에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²³⁾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과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및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으로 구분한다. 이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이외에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여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로서 양도차손의 호별공제와 배우자·직계존속간 증여재산의 이월공제가 있다. 먼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에 대하여 호별로 공제하고 있다. 호별공제라 함은 제1호 자산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과 2호 및 주식 및 출자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호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적으로 공제토록 하고 있다.²⁴⁾

22) 전병욱, 2015, 파생상품 소득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적정 과세범위 논의. 2015년 1월 19일자 정책토론회 자료 참조.

23)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24) 소득세법 제10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6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라. 개인의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점

2014년말 세법개정으로 인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는 법인과 외국인을 제외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세법적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개인의 파생상품 시장 참여 제한으로 전체 거래량이 줄고 변동성만 줄어들면서 파생상품 시장 본래의 의미와 기능이 퇴색될 수 밖에 없다. 2014년말 개정세법의 적용은 법인과 외국인을 제외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세부담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조세 특례제한법으로 양도차익의 과세를 회피할 수 있지만, 개인은 파생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회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인중심으로 파생상품 거래량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과 외국인의 투기 매매 위축에 따라 급격히 감소된 차익거래의 기회 또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차를 두고 바스켓이나 ETF 차익거래가 줄어들면서 파생상품의 거래량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파생상품의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에서 주요 과세대상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개인들의 세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개인의 일시적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면 과거 손실부분을 차감하지 않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조치는 개인의 담세력을 무시한 채 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세부담 증가로 인하여 파생거래를 하지 않는 유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의 부과는 모든 투자 주체들에게 예외없이 부과되는 반면, 양도차익의 과세는 모든 주체들에게 과세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의 투기세력에만 과세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관은 모두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반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은 포괄손익에 포함되게 되어 모두 과세대상에 속하게 된다. 외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회피가 가능하다.²⁵⁾

마. 거래내역 제출 협력상의 문제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긍정

25)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게 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은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만, 미국과 싱가포르, 네덜란드와 호주, 뉴질랜드 등 20개국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를 하게 되므로 한국에서 과세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일본, 중국 등 58개 국가에 대하여는 국내에서의 과세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국내기관과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이 법안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기대세수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당초 10%에서 20%로 올린 이유가 이러한 이유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부담만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파생상품 거래 대금이 주식보다 많기 때문이다. 비록 파생상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증거금이 주식보다는 적지만, 회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래세는 엄청난 규모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직접적으로 회전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양도차익 과세는 사후적으로 증가된 증거금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거래세에 비하여 양도차익의 소득 과세는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조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를 매분기에서 1년에 한차례로 바꿨지만 파생상품은 워낙 거래빈도가 많고 복잡해 신고자체가 만만치 않음을 주장하면서 시행령에서 계산 방식과 서식·과세대상 상품 등을 최대한 간소화 하여 개인들의 신고부담을 줄여야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거래내역의 제출을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이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안정이 안정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지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년 더 연장하여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의 소득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 금융 선진국 대부분이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반대의 의견이 없는 상황이다. 금번 법개정은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채택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거래세의 경우 도입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큰 반면, 국제적인 과세원칙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과세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므로 소득세 부과에 대하여는 그다지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도한 세율로 시장이 침체되면 당초 취지인 세수증대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과 해외 선진국의 과세체계를 볼 때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현물과 선물거래의 과세체계의 통일성 필요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현물시장의 주식과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한쪽은 거래세를 부과하고, 한쪽은 양도소득세를 부고한다는 것 그 자체가 외국의 사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변형된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이후부터 연금기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었으며 2013년도부터는 우정사업본부의 매매에 증권거래세를 물려 전체 거래량과 세수가 동시에 감소하였다. 향후에는 주식과 선물에 대하여 동시에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적으로 개인 중심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지만 투자자이탈과 변동성 감소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도 위축돼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주식과 파생상품의 이원적인 과세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통일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국의 파생상품 과세 현황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모두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여 왔다. 다만, 대만에 이어 이탈리아가 최근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 형태로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EU 11개국의 경우에는 기존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금융기관의 거래에 한하여 금융거래세(주식 0.1%, 파생금융 0.01%, 채권 0.1%) 도입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세부 논의중에 있다. 이탈리아는 기존 양도소득에 더해 2013년 9월부터 파생상품의 종류와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 현황

유가증권	파생상품	국 가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브라질, 영국
자본이득세	×	호주
거래세	거래세	대만 (선물 0.004%, 옵션 0.1%)
거래세	×	한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스위스, 그리스
×	×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뉴질랜드, 멕시코

자료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국회예산정책처)

(2) 주요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본이득세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대부분의 선진국은 거래세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는 거래세 부과에 따른 거래감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한 대만의 경우를 참고하여 고액(약 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고액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

나. 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주식과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세를 동시 부과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현물인 주식에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파생상품에 과세를 하는 경우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세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²⁶⁾

26) 중국은 후강통(滬港通) 제도의 실시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3년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허용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과세가 강화되어 투자자로 하여금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세수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파생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투자자들도 이익이 감소하는 등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비판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투자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월공제의 허용과 기간별 손익의 통산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에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공제하고 있다. 이처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과거에 발생한 손실분에 대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지만, 파생상품은 여러 개의 자산을 편입해 복합 투자하는 만큼 한쪽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²⁷⁾ 미국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손실공제를 허용하는데 이는 파생상품 본연의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 양도차익 과세대상의 최소화 필요

2016년부터 파생상품으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세율에 상하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초기에는 10% 과세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0%로 과세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 공제되며, 예정신고 없이 연 1회만 확정신고로 납부를 하면 된다. 금융투자업자(증권사)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고객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2014년 세법개정안은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양도세 부과안이 기초가 된 것이다.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거래세 부과보다는 양도소득세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당초 일부 의원의 입법발의에서는 기본세율은 10%였는데 후속 논의에서 기획재정부가 20%를 기본세율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업계의 충격과를 감안해 당분간 탄력세율로 10%(기본세율의 상하 최대 50%까지)를 가감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도입초기에는 10%세율을 적용하되 추후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시장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연착륙이 필요하며 당분간은 최소한의 세율과 과세대상으로 선정 후 향후 과세대상과 세율의 단계적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세율이나 과세시기 및 과세방법 등의 기본 과세체계는 현행의 양도소득과 동일한 형태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세부담의 수준

27) 이월공제란 가령, 전년도 파생상품에 1억원을 투자해 3,000만원을 손해 보았을 경우에 올해 나머지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해도 2년간 총손실을 2,000만원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 현재의 유사한 소득과 같이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게 하는 장치들의 마련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물인 주식시장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지 않는 반면, 현물인 주식시장에서 파생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는 또 다른 조세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 론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에 부과되지 않았던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과세가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개인들은 과세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선물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16년부터 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으로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는 분리 과세를 적용기로 하였다.

2014년 말 법개정은 최근 침체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더욱 침체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개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차익거래 또한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파생상품 운용시에 거래세 보다는 소득과세가 되어 금융시장에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관련 상품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용하여 이월과세 등의 허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금기금은 증권거래세 비과세를 위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파생상품 운용에 대하여는 거래세 부과보다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 및 2016년부터 과세예정인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현행과 같은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세 과세와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과세는 통일되게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거 손실 발생분에 대하여 손익을 통산하도록 하며 손실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시에 과세대상과 세율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적절히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파생상품에 관한 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현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세 부과 이외에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소득세 부과의 문제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

물 시장과 선물시장을 분리하여 살펴보기 보다는 하나의 금융시장의 큰 틀 안에서 파생상품 양도차익 소득과세에 관한 법개정 평가 및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소득세 부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낙희. 2005.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조세법연구[XI-2] : 279-302.
- 김수성·문성훈. 2014.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과세 개선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31권 제3호 : 43-73.
- 김애경. 20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5권 제1호 : 125-154.
- 류혁선. 2010.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1권 제1호 : 217-254.
- 오 윤. 2005.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 차익거래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XI-2] : 233-278.
- 옥무석. 2001. 파생상품 관련 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발간자료.
- 이상신. 2005. 기본파생상품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XI-2권 : 201-232.
- 이영한. 2013. 증권거래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동향, 조세연구 제13-3집 : 263-294.
- 이영한·강남규. 2010.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 : 파생상품거래세와 파생결합증권 과세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금융세제개선방안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
- 오준석. 2010. 금융거래의 안정화를 위한 토빈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
- 전병욱. 2015. 파생상품 소득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적정 과세범위 논의. 한국거래소 정책토론회 자료.
- 전병욱·최유진. 201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타당성에대한 연구, 법조 64권 제9호 : 257-295
- 정영기·박정우. 2001. 파생상품거래의 과세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7호 : 233-269
- 채은동. 2012.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77호
- 홍범교. 2010.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제168호.
- 홍범교·이상엽. 2014.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정비방안. 금융상품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 공청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홍범교·이상엽. 2012.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n Income Taxation on Capital Gain of Financial Derivatives

Su Sung Kim* · Wonseok Choi**

— <Abstract> —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s on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the spot market and income taxation on capital gain of financial derivatives in the futures market and evaluates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law. This study presents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vitalization of the futures market and the spot market.

This study presents the improvement direction on income taxation on capital gain of financial derivative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mendments the legislations on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the spot transaction and income taxation on capital gain of financial derivative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allow the deduction carried forward on capital loss of financial derivatives. Third, it is needed to revise the legislations for the minimization of taxpayers' burden about taxation objects and tax rates. Fourth, income taxation on capital gain from the disposition of shares is also needed.

This study proposes the problems on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the spot market and income taxation on capital gain of financial derivatives in the futures market and their effects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on them.

<Key words> financial derivatives, securities transaction tax, capital gain of financial derivatives, income taxation

* The Korean Teachers Pension, Ph.D. of Taxation, mercury@tp.or.kr, First Author

**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wschoi@uos.ac.kr, Corresponding Author